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1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 임오경 · 박 정 · 임광현

한병도 • 강유정 • 김용만

서영교 · 김병주 · 신영대

김윤덕 의원(10인)

제안이유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한류열풍 속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

한복은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임에 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기와 의례 시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인식되 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음.

최근 한복의 심미적 디자인을 현대 패션과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 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한복 수요 급감과 한복산업의 영세성, 인력 고 령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 록 함(안 제6조).
- 라.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복진흥원을 설립함(안 제8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전시관 설치·운영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육성, 한복착용 진흥·우대, 한복문화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

원,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부터 제20조까지).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한복문화의 진흥 및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한복(韓服)"이란 한국의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옷으로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를 비롯한 의복과 장신구 등 한국의 전통 복식(服飾)과 이를 계승・발전시킨 복식을 말한다.
- 2. "한복문화"란 한복 디자인·기술·관습·모양·행위·의식 등 한복과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3. "한복문화산업"이란 한복 또는 한복문화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

제5조(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2.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3. 한복문화 교육
- 4.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5. 한복문화산업의 홍보 및 국제교류
- 6.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

- 7.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나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복문화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

-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연차보고서 제출) ① 정부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한복진흥원 설립) ①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복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 2.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 3. 한복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 4.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교류
- 5.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 ⑥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소 또는 대학 등을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 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우수사례의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한복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한복문화 및 한복산업 활성화

- 제11조(한복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복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한복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

강좌, 문화강좌 등에 한복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설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한복문화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시관 등 설치·운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은 한복 착용 등 전통문화 및 한복문화산업 관련 행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최 행사에서 한복을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한복문화주간) ① 한복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한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복문화주간'을 한복 입는 날로한다.
 - ② 한복문화주간의 운영과 그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한복을 착용한 사람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국·공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입장

- 료 · 관람료 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감면 요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국제교류 및 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대학·연구소, 그 밖의 해외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한 복문화산업 세계화에 필요한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 제18조(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복 디자인·소재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능력 등을 갖춘 한복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진흥원을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자 및 투자자의 안정적인 성 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한복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복 수입을 제외한 한복문화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2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